

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(제14조의3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
<p>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6개월 미만 빌려 준 경우 2.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빌려 준 경우 3. 1년 이상 2년 미만 빌려 준 경우 4. 2년 이상 빌려 준 경우 	<p>법 제28조의2제3항</p>	<p>인정정지 6개월</p> <p>인정정지 1년</p> <p>인정정지 2년</p> <p>인정정지 3년</p>